

포털 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검토

강 경 근

송실대 법대 교수

- 송실대 법과대학 학장,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학회 회장 등 역임
- 논문 및 저서: 「헌법」, 「국민투표」, 「과학기술시대에서의 기본권」 등

I. 인터넷포털사이트는 포털이라는 이름의 언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정한 법이다.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는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인터넷포털사이트인 포털은 여기의 언론사에 속하는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가, 아니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인가, 또는 뉴스통신사업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인터넷신문사업자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포털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래 포털, 즉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 : Portal이라는 단어는 ‘입구’를 뜻한다) 또는 웹 포

털(Web Portal)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를 말한다. 일종의 인터넷에 의한 정보 유통의 통로 개념이다. 정보의 생성과 저장의 형성 개념은 아니다. 구글(www.google.co.kr),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http://kr.yahoo.com) 등의 포털은 인터넷을 통한 그런 정보 검색의 통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포털사이트들은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 위주였다. 하지만 점차 정보검색, 커뮤니티, 메일, 메신저,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P2P, UCC, 게임, 뉴스, 사진, 지도, SMS, 라디오, TV,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는 정보검색기능에 가장 충실하다. 그 첫 화면에는 『iGoogle | 로그인, 웹문서 | 이미지 | 뉴스 | 블로그 | 학술검색 | 더보기 >> Gmail 캘린더 · 노트 · 툴바 · 데스크톱 · Picasa · YouTube』등이 보일 뿐이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도종 포털이 각종 뉴스로 채워져 있는 원색의 화면을 우리에게 익숙케 하는 것과는 너무도 달라 무료하게 생각될 정도다.

그런 데 비긴다면 우리의 토착 포털인 네이버,

다음은 물론 야후 등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정보 검색의 통로가 아니라 각 일간지 뉴스를 모아, 이를 보기 좋고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정리하여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게 해 준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간지를 종이신문이라 한다면 이는 '화상신문'이라 할 정도로 정보 전달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

대개 오늘의 우리들은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에 들어가서는(사실 인터넷 접속은 곧 포털에의 입장인 것이 현실이다), 보면서 흥분과 격정을 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지난 촛불집회에서의 다음의 아고라의 기능을 생각해 보라) 신문 대신 읽으면서 각종 댓글을 통하여 밑바닥 정서도 알고, 그러면서 난무하는 유언비어와 비속어 등으로 상처를 입고 명예를 훼손당한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한다.

우리의 포털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전달 등의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보이며 정보 유통을 통한 그 통로의 역할은 지식 검색 등의 부수적 기능으로 보일 뿐이다.

이건 포털이라는 이름의 언론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사로 의율하여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야 하는 당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¹⁾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 취사선택하

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며, ...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을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 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네이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인 피고 CBSi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포털의 언론적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입법은 당위의 문제

복잡한 이론적 접근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적

1) 서울고법 2008.1.16. 2006나92006 판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84]

포털의 언론적 행위로 입게 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나마
구제해 줄 수 있는 입법 필요, 이는 대증요법이라는
비판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 측면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

어도 법원이 인터넷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최소한 언론중재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인,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의 대상에 포털이 포함되는 해석 내지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석의 방식으로는 쉽지가 않다.

포털을 언론중재법에서 정의하는 인터넷신문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되겠는데, 위 법 제2조 제8항은 “인터넷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 하고 제9항에서는 “인터넷신문 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 고 규정하는 바, 이는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인터넷신문이고, 그것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신문법 제2조제3항제5호),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

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신문법시행령 제3조)으로 하였다든 점에서, 포털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백인 상태인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언론피해 구제의 측면에서는 언론으로서 취급받고 있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²⁾

결국 입법적 해결의 방법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포털의 언론적 행위로 입게 되는 피해의 구제를 우선적으로나마 구제해 줄 수 있는 입법이야말로 해석의 한계선에서 나오는 황금의 다리가 된다. 이는 언론중재법의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당연히 포털사이트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증요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일 것이다.

입법적으로는 신문법 개정을 통하여 비단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피해 구제의 경우에 있어서만 언론에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언론의 개념에 포섭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포털 자체를 언론에 포함시켜 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행하는 포털의 사회적 실체를 인정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포털 자체는 역시 그 본질이 정보의 통로에 있는 것이지 그 생성과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

2) 동일 : 양삼승,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제24권 제4호(통권 97호), 2005년.

며, 포털사이트의 한 기능으로서의 뉴스 전달의 면을 전체로 확대하여 이를 언론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칫 인터넷을 통하여 존재하는, 포털의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참여적 시장이라는 특성을 말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난점을 피하기 위하여 포털의 뉴스 제공의 면만을 뽑아내어 이를 언론으로 보려는 입법안도 가능하겠지만, 기교적으로 흐를 수 있어 법 적용자와 입법자의 자의를 막기 힘들다. 즉 새로운 정보전달매체가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추는 임시방편(Ad hoc)적 입법이 되어 법의 일반성·추상성 원칙에 반한다.

또 하나의 방식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기왕의 언론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닌 독립한 법제를 따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포털의 사회적 독자성을 인정하여 이를 기존의 언론매체인 신문, 방송 등과 달리 취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체 융합의 현실에 계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Ⅲ. 인터넷포털의 규제를 위한 입법안

1.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입법안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고자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박찬숙의원안, 노웅래의원안 등이 있다.

(1) 박찬숙의원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5. 11.

1. 의안번호 : 3146」 및 「발의연월일 : 2006. 7. 7 4595」 두 법안이 있는 바, 최근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8호).

나.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정의를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9호).

(2) 노웅래의원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5. 11. 8. 의안번호 3263」 및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6. 10. 10. 의안번호 5131」 두 법안이 있는 바, 최근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언론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언론의 범위에 현행법의 인터넷신문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을 발행하는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나. 언론사와 기사공급계약을 맺어 인터넷을 통

인터넷포털의 규제를 위한 입법안은
언론중재법, 신문법의 개정,
독자 입법안 등 존재

하여 지속적으로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뉴스서비스제공자라 정의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다. 뉴스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신문사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의 매개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 기사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명하여 중재위원회에 게시중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신설).

(3) 평 가

박찬숙의원안은 인터넷 포털과 국가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언론중재 등을 신청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하기에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포털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노웅래의원안은 언론보도의 유통을 담당하는 포털이나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는 현행법의 구제수단에 제외됨으로써 언론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하기에 인터넷언론의 정의를 신설하여 현행법의 인터넷신문과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하고, 기사를 단순하게 매개하는 포털을 뉴스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뉴스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매개된 기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언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노웅래의원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도 마련한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다.

2. 신문법 개정을 통한 입법안

신문법의 규율대상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법안은 윤원호의원안, 김영선의원안, 심재철의원안 등이 있다.

(1) 윤원호의원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6. 11. 21. 의안번호 5431」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편집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기사공급계약을 맺어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인터넷포털을 운영하는 자는 기사를 제공함에 있어 기사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기사를 생산한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2) 김영선의원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7. 14. 의안번호 249」은 다음과 같다.

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기타인터넷간행물”에 관하여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다. 제2조제2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 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3) 심재철의원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7. 24. 의안번호 397」은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

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인터넷포털의 경우도 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등 그 사회적 책임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인터넷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라. 인터넷포털사업자로 하여금 본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 기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포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도 즉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기사의 조회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신설).

(4) 평 가

윤원호의원안은 인터넷포털에 의한 기사의 편집·조작 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면서도 신문법을 개정하여 포털 자체를 언론으로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포털이 제공받은 기사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원래의 기사를 생산한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현실의 실제 범주를 확장하는 입법으로 평가된다.

김영선의원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

헌법은 통신을 그것이 기능하는 역할 내지
기능에 따라 규범적 위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포털은 뭐라 해도 우선은 헌법 제18조의 통신

에 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바, 이는 언론을 그렇게 나누는 당위성이 부족하며 개념의 일관성 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심재철의원안은 인터넷포털은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보나 편향된 보도라 하더라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독자의 권리 확보와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전제로, 인터넷포털에 대해서도 현행 신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인터넷포털이 다른 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편성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회 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본래 기사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안 역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다양한 기능을 할애하고 뉴스 제공의 측면을 상당하게 중시하는 입장이라 평가된다.

3. 독자적 포털 규제를 위한 입법안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 기존의 매체 중심의 법제에 포섭하려는 시도 외에 아예 이를 독자적인 언론의 매체로 보아서 규제하기 위한 입법안이 있다.

진수회의원안은 2007.6.18. 의안번호 6878인바, 이

는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검색서비스사업자가 검색서비스와 연계하여 신문법 제2조 제2호 및 제5호의 신문, 인터넷신문과 방송법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뉴스 등의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제2조제9호)로 정의함으로써 이른바 맞춤형 독자성의 법안을 제시한다. 이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뉴스콘텐츠제공자의 허락 없이 당해 뉴스콘텐츠의 제목 및 내용의 임의적인 편집이 금지되며(제16조제1항),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뉴스콘텐츠제공자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오보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뉴스서비스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서비스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동조 제4항).³⁾

IV.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 통신으로 볼 것인가

1. 인터넷언론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신문법 개정을 통하여 그에 적용되는 언론으로 하는 방식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실제로 헌법 제21조 제3항 “통신·방송의 시

3) 진수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동찬, 포털뉴스의 법적규제에 관한 논의 -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집, 2008.5, 12-13면 참조.

설기준"이라 할 때의 '통신'은 언론으로서의 통신인 점에서,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이라 할 때의 통신이 정보유통의 매개를 의미하는 것과 비교된다. 헌법은 통신을 그것이 기능하는 역할 내지 기능에 따라 규범적 위치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포털사이트는 뭐라 해도 우선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이다.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의심 없이 인터넷언론으로 본다 하더라도, 인터넷언론이라 지칭되는 정보전달매체는 하나의 정의에 포섭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규범 시스템이 이를 '온라인미디어'라 하는 뉴스전달매체 내지 정보전달매체로 정의할 것인지 또는 정보유통의 매개, 즉 '통신매체'로 포섭할 것인지 또는 그 양자가 융합된 실체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법적으로 일관되게 정의·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On-line 언론'의 징표는 '디지털언어' 사용, '인터넷' 등 통신망에 의한 표현의 송달, 송신자와 수신자의 '상호작용성', 즉 쌍방향성 등에 있다. 이 디지털화(Digitalization), 상호작용성(Intersactivity), 통신·방송의 융합화(Integration) 경향 등으로 인하여,⁴⁾ 특히 그 상호작용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단지 정보전달매체의 기능만 지니면서,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왕의 인쇄물이

나 방송 등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를 오프라인에서의 언론매체나 매스미디어에 적용되는 법제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⁵⁾

2. 인터넷언론의 피해 구제에 관한 접근의 특이성

헌법 제21조의 언론으로 포섭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이라면 당연히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익의 충돌을 조화하는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⁶⁾ 반론권(Right of Reply)은 언론매체의 보도 등으로(일방적 인상만 형성되어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의 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반론권의 행사는 틀린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며,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다.

또한 인터넷언론으로서의 인터넷신문은 디지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발행되는 신문⁷⁾,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On-line Media이다. 기존 언론사가 발행 주체로 있는 종이신문 내지 그 종이신문에 부가적으로 송출하는 종속적 온라인신문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신문에서의 반론권 인정 여부나 범위는

4) Lawrence Lessig, "The Path of Cyberlaw", 104 Y.L.J. 1743(1995) 및 Lawrence Lessig, Reading the Constitution in Cyberspace: <http://www.law.emory.edu/ELJ/volumes/sum96/lessig.html>.

5) 오마이뉴스 등의 인터넷 신문은 속성상 언론매체로 인식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판지일보 등의 패러디 신문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전자게시판 등을 언론매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은 확실치 않다. 이재진, 언론매체 인정, 사법 관할권이 쟁점, 「신문과 방송」(2003.1, 385호), 28-31면.

6) 憲裁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결정[판례집 3 518-541] 특히 524-525면.

7) '오마이뉴스'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는 이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그간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해 볼 때, 오늘날 급속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2002.2.9). 이와 같은 유권해석이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니겠지만, 언론의 의의에 관한 헌법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구체적인 실정법상의 적용 양태에 실익을 주는 판단이기보다는 원론적 평가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언론’ 수준에 그치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은 각각 신문법이나
방송법으로 포섭 가능,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터넷언론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요구됨

기사 내지 콘텐츠가 작성되고 전송되는 경우 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⁸⁾

그런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의 의미를 매체로서의 언론 전체로 본다면, 그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계속성을 지니는 정기간행물로서의 신문이라는 매체에 한정하지 아니 하고,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언론매체 전체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의미의 신문에 해당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인터넷언론에 대한 적용 범위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접근은 기존 언론에 부과되었던 법적 규제를 인터넷언론에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 여하에 따른 기왕의 접근 방식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의 완화 경향을 점차로 기존의 언론매체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접근 방식이 더 요구될 것이다. 다만 인터넷언론은, 종이언론에 비하여 ‘확장된’ 통신 영역 내지 소규모적 집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언론에 비하여 의제(Agenda) 설정기능

과 영향력이 산발적이고 또한 인터넷이용자가 방송에 비하여 접근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언론’ 수준에 그치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 등의 경우에는 각각 신문법이나 방송법으로 포섭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언론’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요구된다. 반론권에 대해서 본다면, 일방향적 정보전달매체 내지 매스미디어의 상대방인 정보수용자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언론수용자의 언론매체에 대한 이 권리는 의사소통의 쌍방향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온라인언론’이라도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법제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으로 지칭될 수 있는 포털 등과 같은 정보전달의 장들은 가능한 한 헌법 제21조 제3항의 언론의 자유에 포섭하여 그 실정법상 보호와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18조의 통신으로 취급되면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관련법의 규율 대상인 현실에서,⁹⁾ 인터넷언론 발행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내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로 이해되어¹⁰⁾ 언론법제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¹¹⁾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8) 최영·김병철, 인터넷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국내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언론학보」, (2000년 제44-4호), 177면.

9)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정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법 제2조제1호) 등을 말하며, 정보통신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동조 제3호)을 말한다.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수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거나, 그러한 통신망 내에서 또는 다른 통신망과의 사이에 디지털화된 내용물의 송·수신 등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보호와 규제를 받게 할 가능성¹²⁾ 등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인터넷언론 관리자의 책임이 무겁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결과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다.

V. 인터넷포털사이트 뉴스 피해 구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복잡한 이론적 접근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적어도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으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한, 그로부터 나오는 피해의 규제는 직접 관련되는 법률의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반론권을 준다든지 정정보도청구권을 주려는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박찬숙의원안은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포털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한 것이며, 노웅래의원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도 마련한 점에서 구체적이다.

포털 관련 법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 구제 이상의 영역에서 이를 언론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는 다른 인터넷매체와의 비교에서 형평과 일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인터넷포털사이트 전체를 언론으로서 보는 방식보다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를 인터넷언론으로 보고 거기에 신문법 등의 법적용을 하는 법기술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포털에 대해서 당해 부분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대표자를 게시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주는 법제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포털 전체를 신문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윤원호의원안은 한 발 앞서 있어 따라가기 벅차며, 김영선의원안은 이를 기계적 수직으로 나누어서 본다는 점에서는 법적 안정감은 줄 수 있으나 개념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게 되며, 심재철의원안은 인터넷포털을 신문법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을 규정한 안이라 여겨진다.

진수희의원안은 포털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자는 것으로서 입법적으로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푸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임시방편(Ad hoc)적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이후 매체의 발전 과정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진전된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참고문헌〉

- 姜京根, 『憲法』, 법문사, 2004년
- 姜京根, 정보화 사회와 대의정 그리고 헌법의 개정,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6집제3호) 1998. 6, 25-41면.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라 한다.

12) 인터넷언론으로 일컬어지는 당해 사이트의 관리자 내지 인터넷사업자에게 편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자(Publisher)로 취급되어 무과실책임에 유사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엄격책임을 지는 반면, 전혀 편집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배포자(Distributor)로 취급되어 통상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한다.

- 姜京根,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제3호) 2000.
- 姜京根,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 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세미나: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 2000. 11, 23-25면.
- 姜京根,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 「언론중재」, 2003, 여름호.
- 權奇昶,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석 제137호) 1997. 4, 1-32면.
- 김대호, 미디어융합과 규제,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2000년 봄).
- 金敏培,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법적 문제-수정헌법 제1조와 CDA를 중심으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1집제2호) 2000.12, 243-261면.
- 金榮秀 · 曹圭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적 기준과 언론권,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연구소 제11호) 2000년 7월, 155-197면.
- 金榮秀 · 지성우, 독일 멀티미디어 관련법상의 방송 · 통신 · 멀티미디어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제14권제2호)
- 金日煥, 헌법상 새로운 정보질서확립을 위한 서설적 연구,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7권제1호) 2001.5, 207-232면.
- 金日煥,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효율적인 기본권보호에 관한 예비적 고찰,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8권제3호) 2002.10, 65-85면.
- 朴宣映, 인터넷 신문 · 방송과 반론보도,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2000년 봄)
- 朴宣映, 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9집제1호) 2000. 11, 143-159면.
- 朴宣映,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제2호) 2000. 11, 158-177면.
- 朴宣映, 정보사회에 있어서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의미와 범위,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제4호) 2000. 12, 86-110면.
- 성동규 · 라도삼,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년)
- 成樂寅,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0집제2호) 2001. 12, 33-67면.
- 成樂寅, 인터넷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한국기자협회 제18회 기자포럼」 2002. 2. 19.(화)
- 梁建, 표현의 자유에 관한 1990년대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연구소 제11호) 2000년 7월
- 양삼승,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제25권4호(통권97호) 2005. 12.겨울) 언론중재위원회.
- 廉東信,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상 책임-독일 '연방정보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인터넷법률」(법무부 제5호) 2001. 3, 138-157면.
- 李光眞, 인터넷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률」(법무부 제8호) 2001.9, 68-83면.
- 李東勳, 인터넷사회에서의 언론자유와 뉴패러다임, 『實甫金榮秀교수화갑기념 헌법학의 제문제』 2000년, 285-301면.
- 李昇鎬,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 「인터넷법률」(법무부 제10호) 2002. 1, 5-23면.
- 李時佑, 정보화사회와 기본권의 변천-정보의 자유와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8권제3호) 2002. 10, 86-117면.
- 李仁皓, 방송 · 통신의 융합과 언론의 자유,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8집제4호제1권) 2000. 6, 247-270면.
- 장현진,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문제점, Law & technology, 제3권제1호(2007년1월),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 정동훈 포털뉴스의 피해 현황 및 사례연구
- 정윤식, 뉴미디어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1997년 봄호 통권62호)
- 조동기/김병준/도준호/강상현, 『인터넷 뉴미디어 진흥을 위한 법 · 제도 조사연구』(정보통신진흥연구원 정책연구 01-16) 2001. 12.
- 曹圭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규제대상과 법적 한계, 『實甫金榮秀교수화갑기념 헌법학의 제문제』 2000년, 319-337면.
- 崔承列, 정보개념, 정보보호의 특수성 및 정보중계자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률」(법무부 제7호) 2001. 7, 81-120면.
- 최영 · 김병철, 인터넷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국내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언론학보」, (2000년 제44-4호)

- 한상희, 뉴미디어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미디어융합현상에 대한 헌법이론의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법률」(법무부 제11호) 2002. 3.
- 한상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2001년 겨울)
-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2000년 봄).
- 황승흠, 인터넷과 기본권,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5권제2호) 1999.10, 23-53면.
- 黃贊鉉,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34권제1호) 2001. 2, 5-39면.
- Wolf-Rüdiger Schenke, Grundrechte Probleme der Telekommunikatio/朴鍾秀(번역), 통신의 기본권적 문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0집제2호) 2001. 12, 1-31면.
- Gerit Manssen, Der Staat in der Telekommunikation/ 임현(번역) 통신사업에서의 국가의 역할,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0집제2호) 2001. 12, 70-91면.
- Walter Rudolf,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n eines Rundfunkgesetzes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金炳圻, 민주적 헌정질서하에서 방송법의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8집제4호제1권) 2000. 6, 193-67면.